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: 2019. 10. 14

제출자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 상위법령인「지방재정법」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」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및 「지방재정법」제13조

나. 기타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9. 8. 27. ~ 9. 16.(20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보고) <u>채권자는 채무액, 이자,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【별지 제5호 서식】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	제6조(보고) <u><삭제></u>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·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